

충청남도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 제시

박혜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책임연구원
hyeeu@cni.re.kr

오병찬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연구위원

CONTENTS

1. 연구목적 및 방법
2. 법 제도 분석
3. 충청남도 법 제도 분석
4. 타 지자체 사례 분석
5. 충청남도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 및 정책제언



요약

- 충청남도에서 제3차 경관계획을 재정비할 시점이 도래하여 계획의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①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경관계획수립지침»,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충남 「경관 조례」 등 법 제도, ② 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관련 계획, ③ 타 광역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과 내용 구성을 제안하였음
-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은 15개 시·군 경관정책이 일관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광역차원의 큰 틀에서 접근하는 정책계획의 성격으로서, 1, 2차 충청남도 경관계획과 연속성 유지, 계획 수립 이후의 성과가 부족한 부분은 개편하고 성과가 양호한 부분은 정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제안하였음
- 앞서 제시한 방향을 토대로, ① 도 차원에서 경관관리가 필요한 중요 경관자원 및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경관자원, 시·군 경계, 중점 경관관리구역, 경관관리 여건 및 성과 등에 대한 선택·집중 조사, ② 충남의 경관자원 특성별 분리 기준 및 계획, 경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시·군에서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정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군 경관계획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0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배경 및 목적

- 충남은 2009년에 「경관 조례」제정, 2013년 1월에 처음 「2020충청남도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12월에 「2030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경관법」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충청도에서는 2019년 12월에 수립한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계획을 정비할 예정임
- 한편, 제3차 국가 경관정책기본계획(2025년~2029년)이 수립됨에 따라 충청도가 경관계획 재정비 시 이를 반영하여 국가와 광역지자체 간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더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역시 경관계획 재정비과 함께 재수립할 계획에 있으므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의 연계성도 함께 고려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충남 경관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서, 법 제도 분석을 비롯하여 제3차 국가 경관정책기본계획 및 최근 타 광역지자체의 경관계획 재정비 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관련 분야 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을 분석함으로써 시·군 경관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범위와 방법

- ①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15개 시·군
- ② 시간적 범위 : 2025년~2029년(5년)
- ③ 내용적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규 및 계획, 타 광역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계획 재정비 과업내용서 등을 활용하고자 함
 - 이에,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연구 범위는 관련 법규 및 계획, 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 발주 과업내용서 등임
 - 주요 연구내용
 -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경관계획수립지침」
: 경관계획에 관한 내용, 조사 및 분석 방법/범위 등
 - 제3차 국가 경관정책기본계획(2025년~2029년)
: 경관정책의 방향 등 및 전략, 추진과제
 - 충남 「경관 조례」 및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 경관계획의 내용 및 범위, 대상 등
 -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 계획 구성 및 내용 분석, 계획 간 유사 및 중첩 내용 등
 - 타 광역자치도/광역자치시 과업내용서
: 광역지자체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발주 과업내용서 분석을 통해 계획 내용 구성 과 특성 분석
 - 충청남도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 제시

02 법 제도 분석

1.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 「경관법」상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법에서 규정하는 도지사 수립 경관계획 내용은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조사 및 평가, 경관구조 설정에 관한 사항은 필수 포함되어야 하며,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경관지구,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 특정경관요소의 관리,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 그 밖에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음(표 1)

〈표 1〉 「경관법」 상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 내용

경관계획의 내용	포함	생략가능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6.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7.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또한 기초지자체의 경관계획은 광역지자체 경관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고, 상호 계획 내용이 다른 경우 광역지자체 경관계획 우선하도록 하는 등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광역차원의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해줌으로써 기초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시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경관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그림 1)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진행하는 기초조사와 관련하여, 법에서는 타 법령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활용, 시행령에서는 자연적 여건, 인문·사회적 여건, 경관 관련 타 계획 및 사업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면서 기존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지역 특성과 사업 및 계획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그림 2)

②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시·군·구·행정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은 해당 시·도의 경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군·구·행정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 내용과 시·도의 경관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시·도의 경관계획이 우선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④ 경관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그림 1] 「경관법」 상 경관계획의 내용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시·도지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지형, 지세(地勢), 수계(水界) 및 식생(植生) 등 자연적 여건
2.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사회적 여건
3. 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4.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그림 2]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 기초조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 「경관계획수립지침」

- 경관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은 국토부 고시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
- 경관계획은 지역의 경관 보존, 훼손된 경관의 개선과 복원,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계획수립,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의 성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규제 및 유도적 수법에 의해 경관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도 경관계획은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 보존, 관리, 형성의 기본방향과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도 차원에서 중요한 경관유형이나 경관요소에 대해서 부문별 관리계획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도 경관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한 경관 보존, 관리,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방침을 제시하고 도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경관유형이나 경관요소 제시, 여건 및 필요에 따라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음

〈표 2〉 「경관계획수립지침」 상 경관계획의 지위 및 성격, 도 경관계획

구분	주요내용
지위 및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 보존, 훼손된 경관 개선·복원,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기본구상, 계획수립, 그 실행방안 등 제시하는 법정계획 - 경관 보존·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 포함함으로써 규제적 수법 외에 유도적 수법을 통한 경관관리 계획 -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 경관형성계획, 농산어촌 경관보전 시책, 고도보존계획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 수립 시 참조계획으로서의 지위
도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구역 전체의 경관을 보존,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기본방침 설정 - 도 차원에서 중요한 경관유형이나 경관요소에 대한 부문별 관리계획 제시

- 경관계획은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독창성과 다양성,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부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 각 소관부처의 경관관리 목표와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각 관련 사업계획 및 지구지정 등과의 연계, 행정체계와 조직, 예산, 주민참여계획 등 실행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도 경관계획은 「경관법」에서 지구지정,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 실행수단, 행정체계 및 예산 등은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관할구역의 여건과 필요에 의해 계획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
- 계획수립에 따른 유의사항으로서, 기존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야 하고, 기존 경관계획에서의 경관자원조사 등 현황조사는 생략 또는 일부만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관계획 정비 시에는 기존 계획을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 3〉 「경관계획수립지침」 상 경관계획 수립 기본원칙 및 유의사항

구분	주요내용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 : 도시미관, 자연경관의 보존 및 관리, 역사·문화자원 가치 제고, 농산어촌 어메니티 증진, 마을가꾸기 사업추진 등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 독창성과 다양성, 유연성 제고 : 일률적인 기준보다 지역적 특성과 요구 고려, 다양한 가치 상존, 계획의 자율성과 유연성 확보 - 총체적 계획 : 도시계획, 자연환경관리, 역사문화 보존, 농산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각 소관부처의 경관관리 목표와 추진방향, 실행수단 고려 - 실행력 확보 : 자연경관, 농산어촌경관, 역사문화경관 관련 사업계획 및 지구지정 등과의 연계,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 조직 및 절차, 예산확보 및 자원조달, 주민참여계획 등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경관계획 검토하여 계획의 연속성 유지, 사회적 여건 변화 반영 - 기존 경관계획에서 경관자원조사 등 현황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졌을 경우 경관계획 정비시 해당 내용 생략 또는 일부만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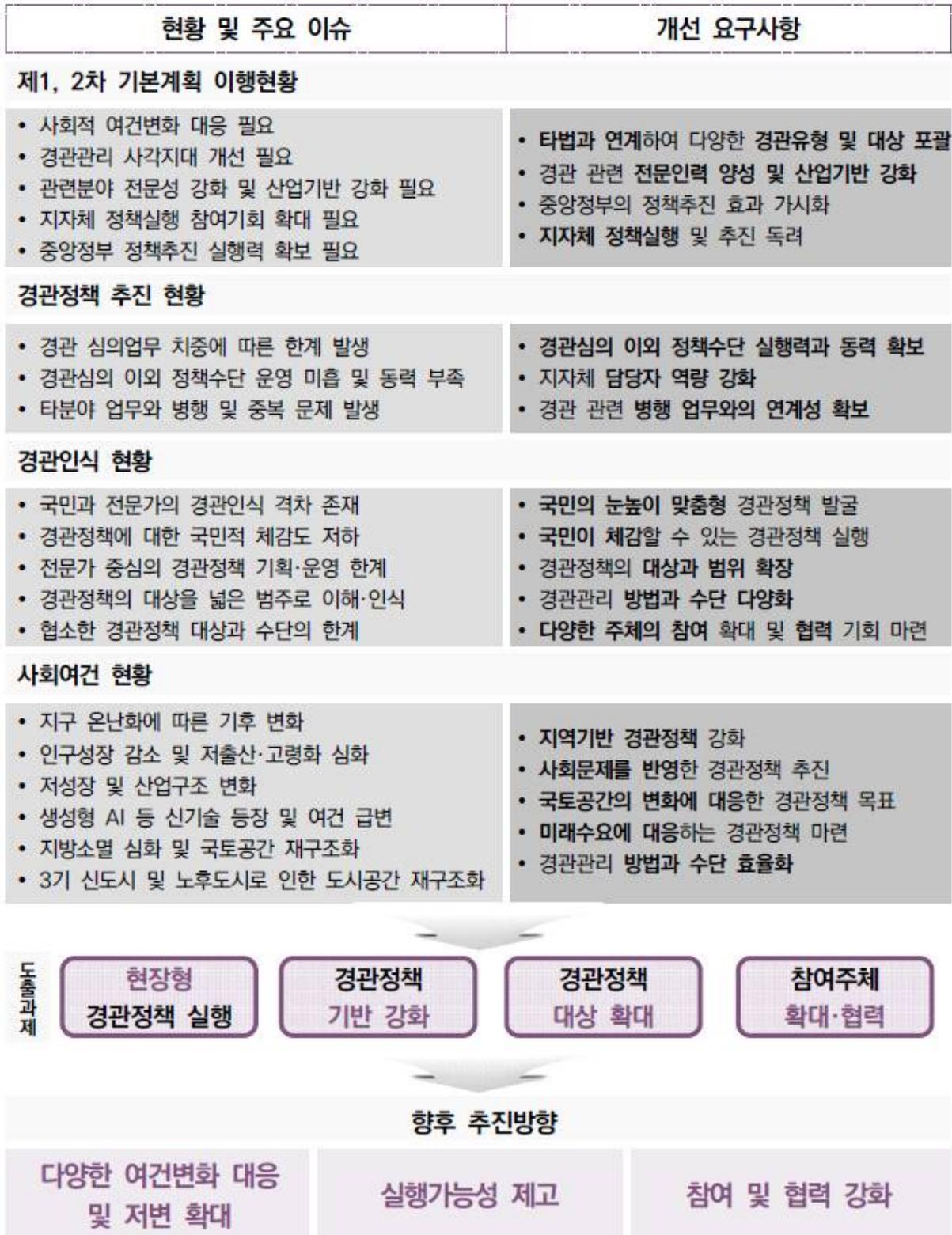
- 도 경관계획은 크게 ①경관계획의 개요, ②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③경관 기본구상, ④경관기본계획, ⑤경관 부문별 계획, ⑥실행계획으로 내용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④경관기본계획 내용 중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및 경관지구 계획, ⑤경관 부문별 계획, ⑥실행계획은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획 정비 시 기존 경관계획 및 해당 관할구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략이 가능한 내용을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음
- 또한 경관현황조사의 경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존 수립된 경관계획의 조사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생략 또는 일부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기존 경관계획 내용을 참고하여 수립할 수 있음
- 즉, 도 경관계획은 ①경관계획의 개요, ②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③경관 기본구상, ④경관기본계획에서의 경관기본계획의 내용과 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계획은 필수 포함되어야 하며, 그 이외에 계획 실행을 위한 내용들은 생략할 수 있음
- 생략이 가능한 내용들에 대하여 타 광역지자체 경관정비계획의 구성 및 내용의 사례 분석이 필요함

〈표 4〉 「경관계획수립지침」 상 도 경관계획 구성 및 내용, 방법

내용 구성	세부 구성	생략가능 여부
1. 경관계획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내용 3) 수립방법 및 수립과정	×
2.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1) 경관자원조사 2) 경관구조분석 3) 경관의식조사 4) 관련법규 및 유사사례 검토	×
3. 경관 기본구상	1) 기본방향 설정 2) 미래상 설정 3) 추진전략의 설정 4) 경관구조 설정	×
4. 경관기본계획	1) 경관기본계획의 내용	
	2) 경관권역계획	×
	3) 경관축계획	×
	4) 경관거점계획	×
	5)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
	6) 경관지구 계획	●
5. 경관 부문별 계획	1) 경관 부문별 계획의 개요 2) 경관유형별 관리계획 3) 경관요소별 관리계획	●
6. 실행계획	1) 실행계획의 성격 및 내용적 범위 2) 경관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방안 3)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제안 4)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방안 5)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경관관련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8)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9) 예산계획 수립	●

3.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 「경관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하였음
-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기반구축 및 정착단계(제1차), 경관정책의 내실화 및 활성화 단계(제2차)를 거쳐 체계화 및 고도화 단계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국토경관의 외연을 확장하여 다양한 경관 관리대상과 주체를 포괄, 협력할 수 있는 실행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음(국토교통부, 2025)
- 제1, 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성과를 비롯하여 경관정책 및 경관인식 현황,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경관정책, 경관정책의 기반 강화 및 대상 확대, 참여주체의 확대와 협력이라는 과제를 도출하여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였음
-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비전과 3개 목표, 4개 추진전략과 8개 정책과제, 각 정책과제별 2개의 추진과제의 총 16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로 사업중심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관리’에서 ‘창조’의 전략으로서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규제’에서 ‘지원’의 경관심의 대상과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경관계획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공공 주도’에서 ‘민간참여’의 전략으로서 경관협정이나 주민 경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주민 대상 교육 운영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개별사업’에서 ‘생태계 조성’의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과 경관분야 전문교육 강화, 경관산업 기초조사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총 16개의 추진과제마다 ①국토교통부,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 등 추진주체, ② 사업 공모, 연구결과를 통한 법 제도 개선, 시범사업 추진 등의 추진 방식을 제안하고 있음



[그림 3] 국토경관 정책 관련 주요 현안 및 향후 추진방향

출처 :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국토교통부(2025)

비전	역사와 미래를 담은 천년 도시, 천년 건축		
목표	품격있는 국토경관 형성 미래 도시건축 자산 창조 민관 협력 산업 생태계 구축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	추진전략	정책과제	추진과제
	① '관리'에서 '창조'로	1. 국토 랜드마크 경관 형성	1-1. 국토 디자인 선도 프로젝트 추진 1-2. 국토경관 루트 지정·홍보
		2. 도시·지역 경관 특화	2-1. 도시 특화 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2-2. 도시·지역 디자인 특화기준 마련
	② '규제'에서 '지원'으로	3. 경관규제 합리화 및 지원 확대	3-1. 경관심의 합리화 3-2.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원 강화
		4. 경관계획 실행력 강화 및 협력 확대	4-1. 공공·총괄건축가 활성화 4-2.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③ '공공 주도'에서 '민간참여'로	5. 경관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5-1. 도시·지역 디자인 참여 활성화 5-2. 도시·지역 디자인단 운영
		6. 도시·지역 경관 참여기반 구축	6-1. 맞춤형 공간 디자인 교육 시행 6-2. 경관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④ '개별사업'에서 '생태계 조성'으로	7. 경관 산업 생태계 조성	7-1. 공간 디자인 산업 활성화 7-2. 경관 국가직무능력표준 고도화
		8. 경관 데이터 기반 구축	8-1. 국토·도시 디자인 DB 구축 8-2. 공간 디자인 산업 기초조사 실시

[그림 4]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출처 :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국토교통부(2025)

- 광역지자체 경관계획은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방향 및 추진전략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 및 추진과제 중 충남 광역도 차원에서 국가계획과 연계하면서 시·군에서 정책과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남도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은 <표 5>와 같음
- 우선, 충남의 경우 여러 시·군에 걸쳐진 역사·문화·자연 자원이 있으므로, ‘국토 랜드마크 경관 형성’을 위한 각 기초지자체 경관자원의 연계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충남에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여러 기초지자체에 걸쳐진 경관자원 중 ‘도시 특화 디자인 혁신사업 추진’과 연계할 수 있는 곳을 제안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충남에서는 경관심의를 공공디자인심의에서 대신하는 경우,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공동심의 운영하는 경우 등이 있어 심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상황임
- 국토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 진행 후 법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국토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심의 대상과 기준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충남 각 기초지자체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관관리 현황 조사, 그리고 서해안 및 도농복합 등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관 특화를 위해 시·군 연계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국가계획 기조와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함
- 국가 계획에서 지역 경관정책의 정합성 확보 및 실행력 확대를 위해 지역경관센터 운영을 제안하고 있는데, 충남에는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가 있으므로 공공디자인센터의 추가적인 기능으로서 지역경관센터 역할을 제안하도록 함
-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 향상, 적극적인 경관관리 참여를 위해 경관자원 조사부터 경관계획 수립, 경관관리 등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이에, 광역 차원에서 시·군이 경관정책에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론

및 시범사업 등을 제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표 5〉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중 광역도 경관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과제

정책 및 추진과제		주요내용	활용 방향
1. 국토 랜드마크 경관 형성	1-2. 국토경관 루트 지정·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국토의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경관관리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경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국토경관 루트' 기획 및 선정 - 국토경관 루트 내 경관이 뛰어난 장소를 중심으로 조망공간을 조성하여, 경관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과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기대 	여러 지자체에 걸쳐있는 경관자원의 연계 및 관리 방향 제시
2. 도시·지역 경관 특화	2-1. 도시 특화 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건축자산, 하천, 공원, 산지, 저수지, 교량 등 지역의 중요한 경관자원이 분포한 지역 대상 경관거점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총괄 계획가 지원 및 사업비 등 지원 - 기존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시 가점 부여 	
3. 경관규제 합리화 및 지원 확대	3-1. 경관심의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심의 대상 합리화 및 심의 운영 기준 구체화, 공동위원회 및 통합심의 운영 지침 개선, 사전 검토 제도 개선, 건축물 경관심의 사후 절차 도입 등 법 제도 개선 - 중점경관관리구역 사업 활성화 및 특정경관계획 수립 지원 	심의 운영 개선,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현황 조사, 특정경관계획 수립 유도
4. 경관계획 실행력 강화 및 협력 확대	4-2.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 (가칭) 지역경관센터 운영 : 지역 경관정책의 정합성 확보 및 실행력 확대를 위해 설립, 운영(컨설팅, 경관계획 수립 지원, 경관정책 제안, 경관심의 운영 지원 등)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지정 방안 제시
5. 경관사업 주민 참여 활성화	5-1. 도시·지역 디자인 참여 활성화	- 국민들의 경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 및 주체적 역할 수행을 위해 중요한 경관자원 조사부터 대표경관 선정·활용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경관정책에 주민참여 방법론 제시
	5-2. 도시·지역 디자인단 운영	- 주민의 적극적인 경관참여 수단 마련을 위해 경관활동 공동체 구성 지원(경관계획 수립과정이나 경관사업 발굴, 이후 평가·피드백 및 모니터링, 경관심의 등에 참여)	

03 충청남도 법 제도 분석

1. 「경관 조례」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경관계획의 내용은 <표 1>과 같이 「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충청남도 경관 조례」에서는 <표 6>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세부내용으로는 시가지경관, 산림경관, 수변경관, 가로경관, 농산어촌경관,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보존 및 관리, 그리고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경관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경관 부문별 계획의 경관유형별 관리계획에 해당되는 내용과 중첩됨
- 한편, 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이 제정되면서 공공디자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범위가 경관계획의 범위와 중첩되면서, 각 법에 근거한 계획, 즉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방향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

<표 6> 「충청남도 경관 조례」 상 경관계획의 내용

구분	세부내용
경관계획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경관 보존 및 관리 - 산림경관 보존 및 관리 - 수변경관 보존 및 관리 - 가로경관 보존 및 관리 - 농산어촌경관 보존 및 관리 - 역사·문화경관 보존 및 관리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표 7>과 같이 경관계획에서는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경관요소 중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공시설물을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이 밖에 이들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로 규정하면서 공공디자인법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경관계획 재정비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의 관리계획 대상 및 범위를 구분함으로써 각 계획의 차별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표 7> 「경관계획수립지침」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첩되는 관리대상

구분	세부내용
「경관계획 수립지침」	제4장 도 경관계획 제5절 경관계획의 개요 4-5-3. 경관요소별 관리계획 (1) 경관요소별 계획은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경관색채, 야간경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분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3) 경관요소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④ 공공시설물의 경우 조화성, 가로연속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배치, 형태, 규모, 통합설치계획 등의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⑤ 색채경관의 경우 지역의 통일성, 조화성 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사용색 범위와 사용방법 등의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이 때, 색채표기는 먼셀, NCS 등 국제표준규격을 사용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퍼걸러(pergola: 서양식 정자)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2.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1) 계획 구성

- 「경관계획수립지침」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 경관계획 내용과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내용 구성을 비교해보면 <표 8>과 같음
- 큰 틀에서의 구성은 지침과 수립된 계획 간 차이는 없으나, 도 경관계획에서 생략 가능한 ‘경관 부문별 계획’을 ‘경관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 우선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을 보면,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도 경관계획 수립 시 경관자원조사는 여러 시·군에 걸쳐 있거나 중요 경관자원 중 도의 관리가 필요한 주요 경관자원을 조사하여 보존자원, 관리자원 및 형성자원으로 구분·지정하여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충남 경관계획에서는 15개의 시·군 경관계획 수립 당시와 충남 경관계획 수립 시 경관변화를 살펴보고 경관유형별 현황을 분석하는데 그쳐 도가 중점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경관자원을 도출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경관기본계획’의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부터는 도 경관계획 내용에서 생략이 가능하나, 충남 경관계획에서는 모두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시·군별 기본계획’을 분석하여 추가 거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에서는 2012년에 수립한 경관계획에서 설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해당 시·군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한 곳은 시·군 경관계획으로 관리수단을 변경하고, 경관계획 수립되지 않은 곳은 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남겨두고 있음
- 또한 경관의식조사 및 경관현황조사 등의 결과를 통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중요 경관구역들을 시·군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 및 관리방향을 제안하고 있음
- 하지만 15개 시·군을 범위로 하는 광역도 계획의 경우, 조사를 계획 수립 일환으로 추진하는 일반적인 계획 수립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시·군 계획에서의 경관현황조사보다 구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시·군에서 조사 및 관리가 어려운 시·군 경계나 여러 시·군에 걸쳐진 경관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향후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2023, 박혜은 외)

〈표 8〉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의 구성

「경관계획수립지침」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생략가능 여부
1. 경관계획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내용 3) 수립방법 및 수립과정	1. 사업개요 1.1 사업개요 1.2 경관법의 변화 1.3 주요 과제 1.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2.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1) 경관자원조사 2) 경관구조분석 3) 경관의식조사 4) 관련법규 및 유사사례 검토	2. 조사 및 분석 2.1 개요 2.2 일반현황 2.3 관련법규 2.4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2.5 시군 현황분석 2.6 경관의식조사 2.7 유사사례 분석 2.8 종합분석 및 경관과제도출	×
3. 경관 기본구상 1) 기본방향 설정 2) 미래상 설정 3) 추진전략의 설정 4) 경관구조 설정	3. 경관기본구상 3.1 경관 미래상 3.2 경관 목표 3.3 경관 추진전략 3.4 경관구조 기본방향	×
4. 경관기본계획 1) 경관기본계획의 내용 2) 경관권역계획 3) 경관축계획 4) 경관거점계획	4. 경관기본계획 4.1 경관권역 기본계획 4.2 경관축 기본계획 4.3 경관거점 기본계획	× × ×
5)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6) 경관지구 계획	4.4 시·군별 기본계획 4.5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 ●
5. 경관 부문별 계획 1) 경관 부문별 계획의 개요 2) 경관유형별 관리계획 3) 경관요소별 관리계획	4.6 부문별 경관계획	●
6. 실행계획 1) 실행계획의 성격 및 내용적 범위 2) 경관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방안 3)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제안 4)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방안 5)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경관관련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8)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9) 예산계획 수립	5. 실행계획 5.1 실행계획 개요 5.2 경관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5.3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에 따른 관리에 관한 사항 5.4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5 경관협정 적용 및 운영 방안 5.6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행정체계에 관한 사항 5.7 경관심의 운영 매뉴얼	●

〈표 9〉 「경관계획수립지침」 상 경관자원조사

구분	세부내용
조사대상	- 해당 도의 경관특성을 나타내거나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경관자원 중에서 자원의 중요도, 가치 등을 기준으로 도에서 관리하여야 할 주요 경관자원을 조사 하며, 경관자원의 분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조사내용	- 한옥, 근대산업유산, 역사·문화·경관적 기념물, 수목, 산림, 길, 염전, 농경지 등 관찰구역 내 경관자원 중에서 우수경관 창출을 위해 도의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중요 경관자원을 보존자원, 관리자원 및 형성자원으로 구분·지정하여, 실행계획 등에서 중요 경관자원의 보전·활용 촉진을 위한 관리·지원계획 수립

- ‘부문별 경관계획’에서는 경관유형별 조망, 건축물,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기반시설물, 색채, 야간조명에 대한 관리계획과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경관심의 시 사업주체가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 ‘실행계획’에서는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관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타 광역시·도의 경관조례 사례만 분석하고 있음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의 대상과 범위가 중첩되므로 공공디자인조례와의 관계, 충남 15개 시·군 조례와의 연계성 및 차별성 확보를 위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함

2) 미래상 및 기본방향, 전략

-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에서는 상위 및 관련 계획, 경관의식조사와 담당자 인터뷰조사를 통해 경관 키워드를 도출하여 ‘즐거움이 다양하다. 다락(樂), 충청남도 2030’으로 경관미래상을 설정하였음(그림 5)
- 기존 경관계획의 5경(내포·백제문화 계승, 서해안 수변관광도시 만들기, 자연생태도시 만들기, 농·산·어촌 정주환경 만들기, 도시 첨단사업으로 선도하는 창조도시 만들기)에서 5樂의 ‘해안과 산림을 보는 즐거움’, ‘찬란한 역사문화를 느끼는 즐거움’, ‘행복한 삶을 만끽하는 즐거움’, ‘청정자연 속에서 일하는 즐거움’

움’, ‘즐길거리가 가득한 즐거움’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음(그림 6)

- [그림 7], [그림 8]과 같이 경관 미래상과 기본방향을 토대로 청정한 자연 속에서 산업, 경제, 문화예술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충청남도 2030 완성을 위한 5가지 전략과 25대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즉, 그동안 충남도 경관계획은 수변 및 산림 등 자연경관, 역사문화, 도시 및 농산어촌 정주환경, 첨단산업을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금번 계획 역시 이와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그림 5]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경관 미래상



[그림 6]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경관 기본방향

산림과
녹지가 푸르른
자연생태도시
만들기

청정해양과 녹색산림경관의 보전과 관리

Urban Generation Chungnam

도농 균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상생하는 재생도시경관 전략

- U1. 기존 주요 도시의 혼란스러운 경관 개선 및 정비를 위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 U2. 지역소재를 활용한 가로중심 테마경관 육성
- U3. 금북정맥과 금남정맥 산림자원 보전 및 녹지축 복원
- U4. 국립 및 도립공원 보전 및 경관관리
- U5. 금강 및 지방하천의 수변경관 및 자연 생태 보전

기존 전략 2

백제·내포
문화가 계승
되고 빛나는
역사·문화도시
만들기

찬란한 고도, 역사문화자원을 존중하는 경관형성

Heritage-Culture Chungnam

충남의 찬란한 백제문화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스토리가 있는 문화예술경관 전략

- A1. 지역 대표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자원을 이용한 상징적 경관 형성
- A2. 주변 역사자원과 조화로운 시가지경관 정비
- A3. 지속적인 역사자원의 발굴을 통한 역사성 강조
- A4. 충남의 다양한 역사유적지의 경관 인지성 확보방안 마련
- A5.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관광 테마경관 육성

기존 전략 3

살기 좋고
도시와 조화로운
농·산·어촌
정주환경
만들기

도시와 전원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Happy Chungnam

너그럽고 온유한 충남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환경경관 전략

- H1. 신도심과 원도심 간 균형 잡힌 경관 형성 및 커뮤니티 생활경관 관리 및 보전
- H2. 목가적인 이미지의 농산어촌마을 경관과 정주환경 관리
- H3. 배후 경관으로의 열린 조망과 가로환경을 고려한 건축물, 시설물 관리
- H4. 도시기반시설로 단절된 연경관의 회복과 방치된 경관저해요소 개선 및 관리
- H5.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참여형 도심 주거지 생활경관 형성

[그림 7]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세부 추진전략

기존 전략 4

첨단 산업
기반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만들기

친환경적 첨단산업을 지향하는 경관관리

Eco-High tech Chungnam

산업단지지대를 활용한 친환경적 첨단산업경관 전략

- E1. 환황해권 산업단지에서 해안으로의 열린 조망경관 확보와 통합적 불량경관 개선
- E2.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내 미래지향적 도시이미지 창출
- E3.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첨단산업 도시를 위한 정비 및 경관 연출
- E4. 산업단지 도로 및 가로경관의 상징성 강화
- E5. 산업단지 별 특화·육성사업을 상징할 수 있는 개성있는 색채 및 경관 연출

기존 전략 5

서해안 중심의
국제적 수준의
수변관광도시
만들기

매력적인 자연·문화를 활용한 관광경관 형성

Attractive Chungnam

수려한 자연환경과 충청남도에 산재한 문화자원이 조화로운 미래형 생태관광경관 전략

- C1. 서해안 해양관광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연안환경 관리
- C2. 평야, 산맥, 해안이 어우러지는 해양경관 특성 보전
- C3. 대천, 무창포 해수욕장 및 관광단지 주변 인공구조물 경관관리
- C4. 공주, 부여, 태안 등 주요관광 거점 별 야간경관 관리 및 형성
- C5. 해안 상업밀집지역의 통합적 경관관리 및 형성

청정한 자연 속에서 **산업, 경제, 문화예술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충청남도 2030 완성을 위한 **25대 전략** 설정

[그림 8]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세부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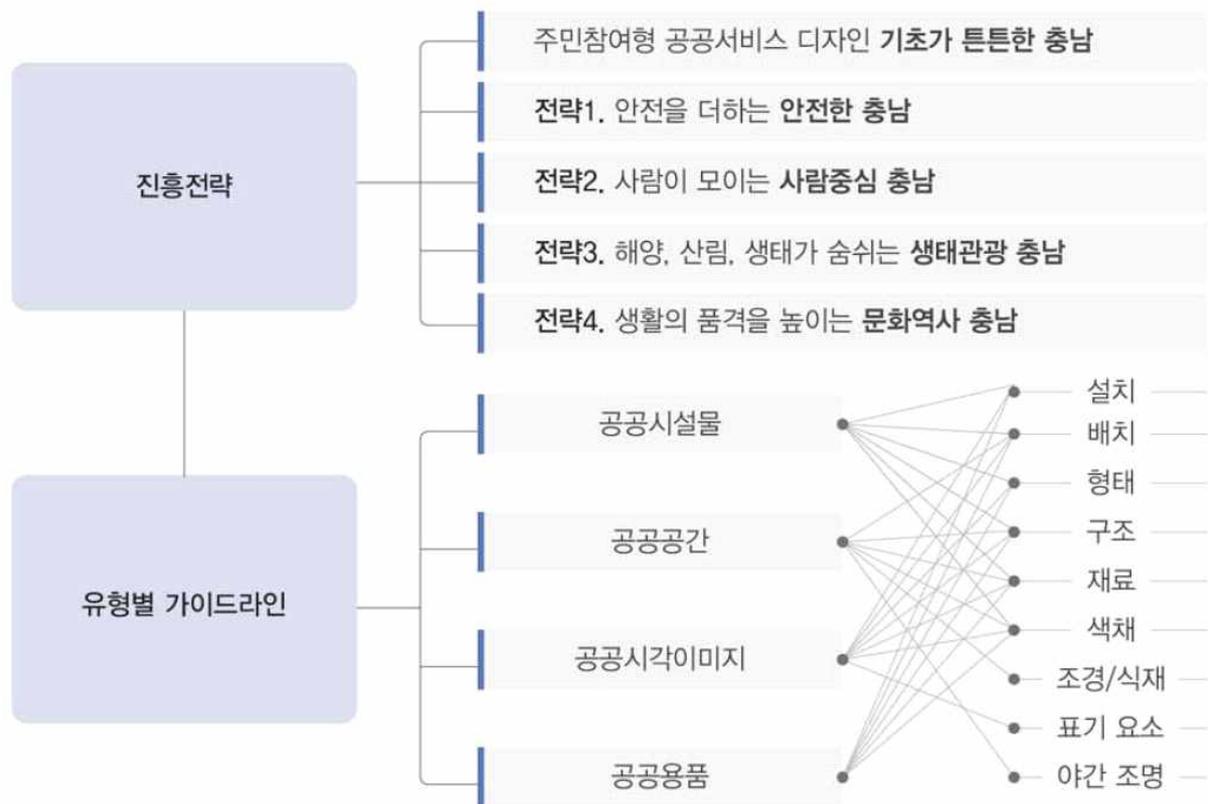
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2019년에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과 동시에 수립되었음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관과 공공디자인은 대상과 범위가 중첩됨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의 공공디자인 범위는 타 광역지자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의 공공디자인 범위를 참고로 하여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이미지, 공공용품으로 설정하여 계획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그림 9)
- 이로 인해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경관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경관요소 중 공공시설물, 오픈스페이스(공공공간)가 중첩됨
- 특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는 범죄예방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이미지, 공공용품별 각 적용 대상에 대하여 설치 및 배치,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안전 및 표기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공공 시설물	<p>[정의] 공공시설물은 일반대중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과 구조물을 의미함</p> <p>[대상]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도로시설물, 임시시설물</p>
공공 공간	<p>[정의] 공공공간은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는 공간으로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설치한 공공시설물을 의미함</p> <p>[대상] 공원, 휴양공간, 광장, 가로공간, 항만공간</p>
공공 시각이미지	<p>[정의] 공공시각이미지는 공공의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이용자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정보형 공공시각 이미지를 의미함</p> <p>[대상] 공공시각, 정보디자인, 도시브랜드, 상징</p>
공공 용품	<p>[정의] 공공용품은 일반대중이 공간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용자의 이동 및 사용성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용품 및 장치 등을 의미함</p> <p>[대상] 안전용품, 복지용품</p>

[그림 9]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상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범위

○ 이에, 배치 및 형태, 재료 및 색채 등을 경관계획에서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어 중첩되므로, 각 계획에서 적용 범위 또는 대상을 구분하여 제시하거나, 연계하여 제시함으로써 계획 간 연계 및 차별화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 고려가 필요함



[그림 10]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구성체계

04 타 지자체 사례 분석

1. 타 광역도 경관계획 내용 구성

- 타 광역자치도의 경관계획 내용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발주를 위한 과업내용서를 조사 및 분석하였음
- 조사 및 분석한 과업내용서는 경상남도(2022년), 충청북도(2024년), 전라북도(2024년), 경기도(2025), 제주도(2025)로 5곳에 대한 것임
- 각 지자체별로 과업내용서를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계획 구성과의 정합성 여부를 분석해 보았음(표 10)
- 「경관계획수립지침」상 도 경관계획의 경우 생략이 가능한 내용이 있어, 세부 내용 중 일부 생략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5곳 모두 생략하지 않고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계획 재정비 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5곳 중 2곳인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의 과업내용서 상 경관계획 내용 구성은 「경관계획수립지침」의 것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실행계획에서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행체계’와 ‘유니버설디자인 실행계획’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름
- 그 외 3곳인 경상남도, 경기도, 제주도의 경우 계획의 재정비인만큼 기존 계획의 재검토 및 보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또한 최근 경관사업 중 야간경관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특정경관계획이나 경관 부문별 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계획 수립 목적 및 절차 등 ‘경관계획의 개요’를 계획 재정비 시 포함하고 있는 곳은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에만 해당되나, 경기도의 경우 ‘경관기본구상’에서 ‘비전 및 목표 보완’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에서 지자체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 경관구조 분석, 경관의식조사, 관련 법규 및 유사사례 검토의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과 달리, 경관조직이나 경관 관련 각종 사업 및 경관협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심의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해당 광역자치도 내 시·군 정책 및 관련 사업 성과 등을 조사·분석하도록 하는 등 경관계획을 수립한 이후 경관정책과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새롭게 경관자원조사를 진행하기보다 조사의 재검토 관점에서 기존 자원조사에서 변화된 자원을 발굴하여 해당 시·군에서 경관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등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의 관점과는 방향이 다를 수 있음
- ‘경관기본계획’ 내용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서는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규정하는 대로 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에 대한 계획 및 관리방향,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수립과 지원, 경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기존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보완 및 연계하면서 각 시·군의 경관계획을 활용하여 경관 특징을 조사하고 관리계획을 마련, 동시에 경관자원을 분리하는 기준 및 경관지구 설정 기준 검토와 재정비 등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음
- 중점경관관리구역나 경관지구는 실행주체인 시·군의 역할이 큰 만큼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안하기보다 시·군에서 계획 및 관리방향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경관 부문별 계획’에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근 야간경관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야간경관계획 또는 가이드라인 정비,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실행계획’에서는 신규 경관사업 발굴 및 방향 제시, 주민참여 방안, 조례나 심의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군 공무원 대상 워크숍 추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표 10〉 타 광역자치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 발주 과업내용서 내용 구성

구성	경기도	경상 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제주도	
개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경관 현황 조사 및 분석	경관 현황 및 실태조사 (법 제도, 조직, 각종 사업, 위원회 운영 등)	●		●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 경관구조 분석, 경관의식 조사, 관련 법규 및 유사사례 검토)		●		
	경관계획 정책성과 분석(해당 지자체), 여건변화 및 전망 (도 내 시·군 정책 및 관련 사업, 경관심의/경관사업/경관협정 등 문제점 분석 및 발전방향)	●		●	
	제도, 계획 검토,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경관자원 조사 재검토 및 신규 발굴 (기존 자원조사 바탕으로 변화된 자원 발굴, 시·군 활용방안 제시)	●		●	
	경관자원 현황 및 구상도 작성 (위치, 특성, 중요도, 분포 등을 종합한 경관자원 분포도)		●		
경관 기본 구상	경관 기본구상 정립 (미래상, 경관 골격 및 관리 구상 제시)		●	●	
	비전 및 목표 보완 (단계별 로드맵 제시)	●			
경관 기본 계획	경관자원 특성별 경관계획 수립 (기존 계획 보완 및 연계, 경관자원 특성 분리 기준 마련, 각 시·군 계획 활용하여 경관 특징 조사 및 계획구축 관리계획 마련)	●			
	경관계획 및 경관계획도 작성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	●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수립 및 지원 (심의 기준,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지구 구역 지정 등 관리방안)		●	●	
	경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 (지구 설정 기준 검토 및 재정비, 지구 지정 실효성 확보 위한 타 법 제도와와의 연계 방안 마련)	●	●	●	●
경관 부문 별 계획	야간경관계획/가이드라인 (재)정비	●		●	
	특정경관계획 수립 및 지원		●	●	
	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	●		●	
	경관 부문별 계획(경관유형, 경관요소)			●	
실행 계획	신규 경관사업 방향 제시, 발굴, 주민참여 방안	●	●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실효성 검토, 과제 도출			●	
	조례 및 심의 운영 효율화 방안 (심의 절차 및 내용, 대상 분석, 정비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	●
	시·군 공무원 대상 경관계획 관련 워크숍		●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행체계			●(전북)	
	유니버설디자인 실행계획			●(전북)	

2. 사례별 경관계획 내용 특성

1) 타 광역자치도 및 특별자치도

①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 제주도의 경우 개발사업 및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문제점, 각 부서 사업들 중 경관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들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다양한 부서 사업들을 경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사, 분석을 유도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경관자원조사는 이전 수립한 경관계획에서의 자원조사에서 변화된 자원 위주의 조사와 주간과 야간 경관자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또한 이전 경관계획의 성과분석 및 연계방안을 비롯하여 각 시·군의 경관 정책과 사업 분석, 경관관리 수단인 심의 및 사업, 협정 등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즉, 경관자원조사를 면밀히 진행하기보다 계획 수립한 이후 실제 경관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경관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경관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② 경관기본계획

- 경기도의 경우,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구조의 계획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기보다, 1, 2차 경관계획에서 경관구조의 계획과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면서, 이번 계획에서는 원도심과 신도심, 농어촌과 도심 등 지역 특성과 최근 이슈를 반영하는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경관유형 구분의 모호함을 보완하면서 도농복합 및 섬 지역 등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자원 특성 분리 기준 마련과 광역도 차원에서 경관의 일관성 확보, 이와 동시에 각 시·군별 경관 특성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③ 경관 부문별 계획

- 경기도와 제주도에서는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야간경관계획을 별도 수립했으나, 이번에는 기존 수립했던 야간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야간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빛공해방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가이드라인과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주도의 경우 풍력발전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계획 지침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최근 많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경기도의 경우 앞서 '경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경관자원 특성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시·군 경계부 및 연속되는 자원에 대한 계획 제시, 공공디자인과 중첩되는 경관요소의 경우 이와 연계 및 정합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서 광역 차원에서 경관의 일관성 확보, 유사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를 유도하고자 함을 알 수 있음

④ 실행계획

- 제주도의 경우 경관 관련 각 법 제도와 연계를 위해 경관심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 운영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심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음
- 경기도 역시 심의 운영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심의대상 및 심의 방법 개선방안 마련은 물론, 경관지구 지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타 법 제도와 연계 방안과 지구 설정 기준 검토 및 재정비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경관이라는 종합적인 분야의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법 제도와 연계 방안 마련과 제도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표 11〉 타 광역자치도/특별자치도 경관계획 구성 내용의 특성

구성	내용	지자체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개발된(승인포함) 개발사업 및 중점경관관리지역 등에 대한 경관사례 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 경관 관련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각 부서 사업(마을발전계획, 농어촌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검토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경관계획 정책성과 분석 및 여건변화 및 전망 : 제1차, 제2차 경기도 경관계획에 대한 성과분석 및 연계방안 등 : 경기도 내 31개 시·군 경관정책 및 관련 사업 분석 : 경관심의,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기 진행 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이후 발전적 대안 검토 - 경기도 경관자원 조사 재검토 및 신규 발굴 : 경관계획 수립에 근거한 주·야간 경관자원의 종합적 평가 : 1차·2차 경관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변화된 경관자원을 발굴 	경기도
경관기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자원의 특성별 경관계획 수립(2차 경관계획의 보완 및 연계) : 경기도 내 원도심과 신도심, 농어촌과 도심 등 특성에 따라 보완된 계획을 제시하고 조화롭고 종합적인 경관계획 제시 : 경관자원 특성 분리 기준 마련(자연, 역사, 문화, 농어촌, 수변, 도시, 섬 등) : 각 시·군 경관 특징 조사 및 경기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본경관계획 구축·관리 계획 마련(각 시·군 경관계획 수립 자료 활용) 	경기도
경관 부문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구성요소를 도시적 차원, 지역적(해안변·중산간)차원, 요소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야간경관을 수립할 수 있는 지표 제시 : 「빛공해방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및 야간경관조명계획 제시 - 신재생에너지발전 정책에 따른 다양한 발전시설(풍력, 태양광 등)과 제주 경관의 연계성을 고려한 지역 및 계획 지침 제시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계획 재정비 : 경기도 야간경관계획의 목표 및 비전, 기본 원칙 재정비(경기도 빛공해방지 계획 수립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반영) - 경관자원 특성별 기본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 원도심 재생사업, 신도시 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농어촌 및 도시지역 등 유형별, 공간별 도시개발사업,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친환경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의 광역형 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 : 시·군 경계부 및 연속되는 특정 자원에 대한 경관 기본계획 제시 : 건축물, 공공공간, 시설물 등은 공공디자인 계획, BF지침 등과의 연계·정합성 검토 	경기도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경관심의 기준 제시 및 정략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경관보전지구 안 행위제한 등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경관지구 건축제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등 : 경관/건축/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사례조사 및 분석 : 개방지수 획일화된 적용보다는 사업별(건축물) 개방감 확보 방안 등 제안 필요 : 조경(차폐, 완충녹지 등) 및 경관색채에 대한 적용방안 및 가이드라인 필요 : 각종 개발사업(관광농원 등) 기반시설 등의 가이드라인 정비 및 심의도서의 명확화 : 심의기준 명확화(심의대상, 변경에 따른 심의 범위), 심의도서 가이드라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지구 설정 기준 검토 및 재정비 : 기 설정되었거나 신설할 경관·미관지구에 대한 관리 운용 방안 제시 : 경관·미관 지구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타 법령 및 계획과의 연계 방안 마련 - 광역차원의 경관계획 연계 운영 방안 제시 실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및 조건, 안건 및 민원 사항 등을 분석하고 정비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 실효성을 위한 방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개발 및 사후 관리방안 제안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심의대상 및 심의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경기도

2) 타 광역자치시 및 특별자치시 경관계획 구성 내용의 특성

- 타 광역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 서울특별시(2023), 세종특별자치시(2024), 대구광역시(2024), 인천광역시(2020), 울산광역시(2020), 부산광역시(2021), 광주광역시(2021)의 사례를 검토하였음
- 이 중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는 구성 내용이 거의 유사하지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큼

①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 타 광역자치시 역시 광역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 이후의 제도 및 사업의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계획에서 설정한 경관목표나 경관구조,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특정경관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리고 그 간 변화된 환경에 따른 계획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보다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있음

② 실행계획

-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서는 경관지구의 관리 현황을 분석 및 관리 계획 수립은 물론 지구단위계획, 경관지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 경관 관련 법 제도 간 연계 및 지침의 구체화 등 경관 관련 법 제도의 실행력 확보를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경관이라는 분야는 경관 및 디자인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관련되는 종합 분야라 할 수 있으므로, 경관사업 추진 시 부서 간 협의 제도 방안, 경관협정제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협약의 적용 방법 및 연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협약에 의한 주민협정은 점차 각 지자체에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관협정제도와 유사 제도로서 경관 관점에서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광역자치도의 구성 내용에도 있었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경관심의 운영 효

- 올화를 위해 심의대상과 심의기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와의 연계 운영 매뉴얼, 공동위원회 심의 시 절차와 심의도서 작성기준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경관법」에서 도로,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하천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대상과 중첩되므로 이와 연계 운영 매뉴얼 및 공동위원회 운영 절차와 심의도서 작성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심의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경관정책 추진을 위해 광역지자체로서 해당 기초지자체의 조례 제·개정 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하도록 하거나, 각종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등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적용 방안과 주체별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기초지자체에서 경관정책이나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기초지자체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특정경관계획 등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제시하도록 하거나 기초지자체에서 경관협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광역지자체가 유도 및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기초지자체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알 수 있음
 - 경관계획 수립 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계획을 도면에 제시하도록 하는 지자체가 많은 경향을 보이나, 대구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경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사업 목표와 사업 형태,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큰 틀에서의 사업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광역 차원에서의 역할로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경관에 대한 인식 향상과 아이디어 및 사업 도출을 위한 주민활동,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경관시책을 발굴하도록 하는 등 주민이 경관계획부터 실행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을 알 수 있음
 - 이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충남도 경관계획 수립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12〉 타 광역자치시/특별자치시 경관계획 구성 내용의 특성

구성	내용	지자체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 「2030대구광역시 경관계획」의 평가 : 경관가이드라인, 사업, 제도개선 등 경관계획 이행현황 및 성과분석 : 경관목표, 경관구조, 중점경관관리구역, 특정경관계획 설정의 타당성 검토 : 법 개정, 군위군 편입, 각종 개발사업추진, 인구변화 등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내용의 적절성, 각 부문별 실천전략 등의 실효성 검토	대구/ 인천 광역시
실행계획	- 경관구조별 경관계획 : 경관가이드라인 구체화(체크리스트 활용과 지구단위계획,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 관련 계획 및 용도지역지구제도와 연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 경관지구 관리계획 : 기 지정되어 있는 경관지구(108개소)에 대하여 법·제도적 여건과 관련계획 분석, 현장조사를 토대로 경관 현황을 분석 : 현황분석을 토대로 지구별 경관관리요소와 경관관리방향을 제시하고 관리계획을 수립	대구/ 인천 광역시
	- 경관사업 추진 : 부서 간의 협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제시(경관법에 의한 경관협정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규정하는 다양한 경관관련 협약 등의 적용 방법 및 연계 방안 검토, 제시)	대구/ 인천 광역시
실행계획	- 경관심의를 위한 매뉴얼 작성 : 경관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회 심의제출 서류(서식), 심의 절차, 심의대상, 심의기준 등 ->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세부명확화 제시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와 연계 심의 시 검토할 매뉴얼(체크리스트) 제시 : 공동위원회 심의 시 진행 절차 및 심의도서작성기준 지침제시 : 예정지역 내 행정 특수성을 고려한 심의내용 추가 매뉴얼 제시 : 기타 경관심의와 관련된 효율적 운영체계 제시	세종 특별 자치시
	- 조례 개정안 제시 : 경관계획 실행을 위해 경관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 : 시 경관조례 및 구·군 경관조례 제정 및 개정 표준안 제시 - 경관가이드라인 이행방안 제시 : 각종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등 용도지역지구 행위제한 등에 경관가이드라인 적용 방안 제시 : 「2040대구광역시 경관계획»,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등 경관 관련 계획을 종합한 부문별 경관가이드라인 제시(각 시행주체별 작성방법과 검토방법을 제시) : 시민교육 및 시책 참여, 구·군 및 경제자유구역 행정 지원체계 마련 : 기타 경관계획 실행을 위해 경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의 경우 개선안 제시	대구/ 인천 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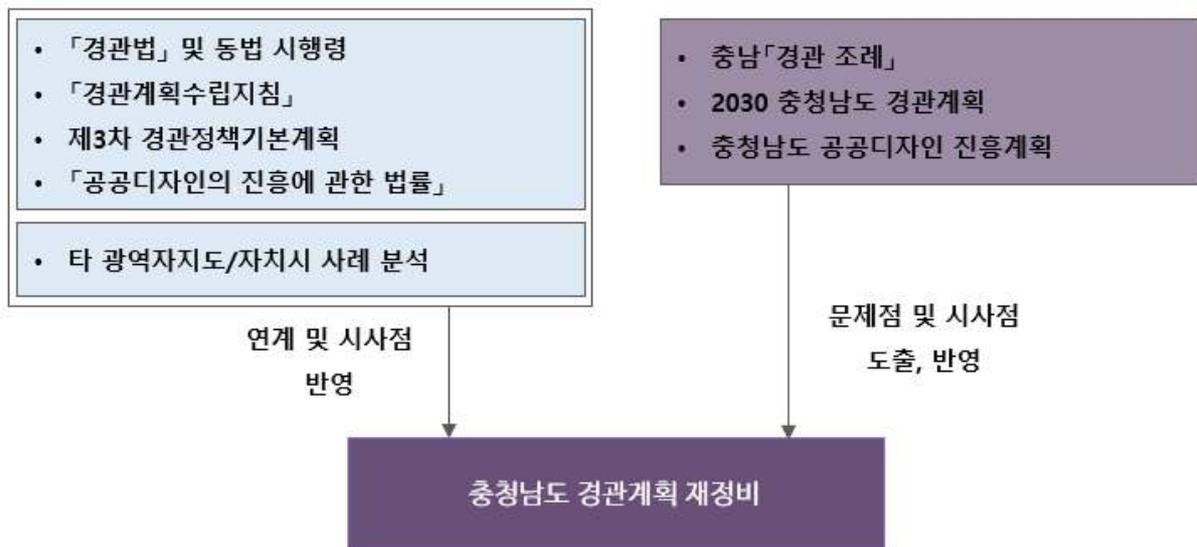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중점경관관리구역, 특정경관계획 및 기타 중요 경관자원 관리, 경관위해요소 제거 등을 위한 사업형태 제시 - 단기 시범사업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사업 목표와 사업형태, 지원 방안 제시 -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추진한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연구와 유사사례를 토대로 경관협정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 - 사업대상 선정, 사업추진주체, 기타 합리적인 사업추진 절차, 구·군 및 주민 지원방안, 평가 방안 등 사업매뉴얼 보완·제작 	<p>대구/ 인천 광역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주체로서 주민참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자원 발굴, 경관관련 아이디어 도출 등의 과정에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유도책 강구·추진 : 계획수립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 마련·실행 : 도시재생 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체 등 대구시 사업 인프라를 활용한 시민참여방안 발굴 - 경관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시도 경관계획 수립시 추진했던 경관포럼, 시민워크숍 등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우수 사례 발굴 및 추진 : 계획내용을 비롯한 경관제도에 대한 교육과, 계획수립주체로서 대구시 경관현황과 과제에 대한 인식 공유, 경관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및 사업 발굴 등 시민활동과 연계 - 주민참여 시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계획 실행을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경관시책 발굴·제시(대구광역시 홈페이지 활용,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 강구) 	<p>대구/ 인천 광역시</p>

05

충청남도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 및 정책제언

1. 기본방향 도출

- 충청남도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은 ①「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경관계획수립지침」,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충남 「경관 조례」 등 법 제도, ②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관련 계획, ③ 타 광역자치도 및 광역자치시의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사점을 반영하여 제안함



[그림 11] 충청남도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 도출

- 분석 결과는 [그림 12], [그림 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3차 경관계획은 광역차원의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해줌으로써 시·군 경관계획 수립 시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경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도 차원에서 중요한 경관유형이나 경관요소에 대해서 부문별 관리계획 제시
 - 여러 시·군에 걸쳐진 경관자원 및 시·군 경계지역 경관관리와 향후 방안, 이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과 역할 제시(중점경관관리구역, 특정경관계획, 시범사업 등)
 - 1, 2차 계획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여건 변화 반영 필요
- 둘째, 계획수립에 따른 성과 분석을 통해 1, 2차 계획의 성과가 부족한 부분은 재수립의 개편, 성과가 양호한 부분은 정비 수준에서 접근, 또한 경관관리에 영향을 주는 타 분야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계획의 재정비인만큼 기존 계획의 재검토 및 보완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고, 경관계획 수립 이후의 경관정책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편 및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
 - 1, 2차 계획에서 해양, 산림, 생태, 역사문화 등을 주제로 경관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공공디자인 계획 외에 해양, 산림, 환경생태, 공원, 국가유산 등의 관련 계획을 분석하여 경관계획에 반영
- 셋째, 도 경관계획은 실행계획보다 정책계획의 성격으로 수립함으로써 시·군 경관계획의 내용과 역할에서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도 차원의 경관관리 수단은 경관심의가 유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책계획 성격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충남 15개 시·군이 경관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로서의 계획 수립이 유용
 - 도의 경관심의 운영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나, 시·군이 수행하는 경관심의 운영의 방향, 특히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중 공공시설물(사회기반시설, 건축물

- 포함) 및 오픈스페이스(공공공간)는 경관심의회와 중첩되므로 대상 기준 범위를 구분함으로써 각 계획의 차별성과 연계성 확보 유도, 공공디자인 심의회와 연계 운영, 공동위원회 운영 절차와 심의도서 작성기준 등 제시
- 경관자원 분리, 경관지구 설정 기준 검토 및 재정비를 통해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충남에서는 2024년부터 「빛공해방지법」에 의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또는 계획을 제시하여 시·군에서 계획 및 사업 추진 시 반영하도록 유도
 -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사업계획의 성격으로 수립되어 있으므로, 도 차원에서 시·군이 중앙부처 경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형태 및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하여 시·군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넷째,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은 자원조사, 구조분석, 의식조사, 법규 및 사례검토 등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충남 경관관리의 현황, 여건, 역량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자원조사, 구조분석은 기존 계획 및 시·군 경관계획을 활용하고 변화된 자원 발굴,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 현황 조사 등 시·군 계획과 차별성 확보
 - 도 및 시·군 경관조직, 경관 관련 각종 사업 및 경관협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심의운영 상 문제점 등 충남의 여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광역도 차원에서 지원방안 제시
 - 다양한 부서 사업들을 경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사 및 분석 필요
 - 기존 경관계획에서는 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경관자원을 도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금번 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최근 경관관리에서 이슈화되는 사업, 야간경관사업 및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제안하는 사업, 여러 시·군에서 협력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 중장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여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 「경관계획수립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차원의 큰 틀에서 방향 제시 • 기존 조사 결과 활용,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지역 특성과 사업 및 계획 등 조사 • 기존 계획과 연속성 유지, 사회적 여건 변화 반영 • 지역의 독창성과 다양성, 유연성 확보 • 관련 각 소관부처의 경관관리 목표와 추진방향 고려 • 도 차원에서 중요한 경관유형이나 경관요소에 대해서 부문별 관리계획 제시 • 각 관련 사업계획 및 지구지정 등과의 연계, 행정조직체계와 조직, 예산, 주민참여계획 등 실행계획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중심, 기반강화 및 대상 확대, 참여주체의 확대와 협력 •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지역 정체성 강화(‘국토 랜드마크 경관 형성’, ‘도시 특화디자인 혁신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시·군에 걸쳐진 자원의 연계 및 관리 방향 제시) • 경관심의 대상과 기준 합리화 • 중점경관관리구역 활성화(관리 현황 조사, 시·군 연계 특점경관계획 수립 방향 제시) •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 역할 강화(공공디자인센터 지역 경관센터 역할 제안) • 주민참여 활성화(기초지자체 경관정책에 주민참여 유도 방법론 및 시범사업 제안) •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경관분야 전문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경관 조례」 •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시·군에 걸쳐 있거나 중요 경관자원 중 도의 관리가 필요한 주요 경관자원 조사 • 도가 중점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경관자원 도출 • 공공디자인 조례와의 관계, 충남 15개 시·군 조례와의 연계성 및 차별성 확보를 위한 조사, 분석 • 수변 및 산림 등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 및 농산어촌 정주환경, 첨단산업을 주제로 기본방향 설정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의 관리계획 대상 및 범위와 구분 -> 각 계획의 차별성과 연계성 확보

[그림 12] 법 제도 및 타 지자체 사례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 타 지자체 사례 분석	
• 기존 계획의 재검토 및 보완 관점에서 접근	• 심의대상과 기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와 연계 운영 매뉴얼, 공동위원회 심의 시 절차와 심의도서 작성기준 제시
• 계획수립 이후의 성과와 문제점 도출(경관조직, 경관 관련 사업 및 경관협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심의위원회 운영 상 문제점, 시·군 정책 및 관련 사업 성과 등)	• 시·군 조례 제·개정 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안 제시
• 기존 자원조사에서 변화된 자원 위주 조사, 주/야간 경관 자원 종합적 평가	• 타법 제도와의 연계 방안과 지구 설정 기준 검토 및 재정비
• 개발사업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문제점	• 경관 관련 법 제도 간 연계 및 지침의 구체화
• 시·군 경관정책과 사업 분석	• 각종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 등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적용 방안과 주체별 활용 방법 제시
• 각 부서사업들 중 경관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 검토	• 경관협정제도와 유사한 협약의 적용 방법 및 연계 방안 제시
• 경관자원을 분리하는 기준 및 경관지구 설정 기준 검토와 재정비	• 시·군 경관협정 추진 유도 및 지원 방안 제시
• 원도심과 신도심, 농어촌과 도심 등 지역 특성과 최근 이슈 반영	• 경관협정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방안 제시
• 지역 특성 고려하여 경관자원 특성 기준 마련	• 신규 경관사업 발굴 및 방향 제시
• 시·군 경관계획에서 경관 특징 조사 및 관리계획 마련	• 경관사업 추진 시 부서 간 협의 제도 방안 제시
•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계획 지침 제시	• 광역차원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특정경관계획 등 추진 사업 제시
• 시·군 경계부 및 연속되는 자원에 대한 계획 제시	• 시범사업의 목표, 사업 형태, 지원 방안 제시
• 경관자원 특성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 주민참여 방안
• 「빛공해방지법」과 연계하여 계획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시·군 공무원 대상 워크숍 추진
• 공공디자인과 중첩되는 경관요소의 경우 이와 연계 및 정합성 검토	

[그림 13] 법 제도 및 타 지자체 사례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2. 계획 재정비 구성 및 방향

- 제3차 충청남도 경관계획 재정비 시 포함할 내용과 방향을 제안함
- 도 경관계획은 「경관계획수립지침」 상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을 비롯하여 부문별 계획과 실행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① 경관계획의 개요, ②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③ 경관 기본구상, ④ 경관기본계획, ⑤ 경관 부문별 계획, ⑥ 실행계획 등 지침 상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을 기존 계획 및 시·군 계획과 차별성을 갖도록 제안함
- ‘① 경관계획의 개요’에서는 기존 계획의 재검토 및 보완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목적과 절차를 제시하도록 함
- ‘②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에서는 충남 시·군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 현황 및 개발사업 조사, 여러 시·군에 걸쳐 있거나 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주요 경관자원 도출과 조사, 경관계획 수립 이후의 성과와 문제점, 경관 관련 각 부서 사업 조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자원조사는 변화된 자원 위주로 조사하도록 함
- ‘③ 경관 기본구상’에서는 사회적 및 충남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경관 관련 소관부처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고려하면서, 1, 2차 경관계획에서의 방향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함
- ‘④ 경관기본계획’에서는 ‘②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에서 조사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활성화 계획 및 특정경관계획 수립 방향 제시, 특히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경관자원 및 시·군 경계지역 등 시·군 간 경관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한 곳에 대한 계획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충남 특성에 맞는 경관자원의 분리 기준을 제시하여 충남 시·군에서 일관된 경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⑤ 경관 부문별 계획’에서는 ‘④ 경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도 차원에서 경관 관리가 필요 또는 시·군의 경관 일관성 확보가 필요한 경관유형 및 경관요소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경관자원 분리 기준에 따라 경관자원 특성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함. 또한 2024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충남 조명한 경관관리구역과 연계하여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함

- ‘⑥ 실행계획’에서는 조직, 법 제도, 경관협정, 경관사업 및 시범사업, 역량강화로 구분하여 시·군에서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정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준 또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 ‘조직’에서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역경관센터의 역할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가 대신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심의’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과 증첩 및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가 경관심의 위원회를 대신하는 시·군이 많은 충남의 여건을 고려하여 심의 대상과 기준 합리화 방안, 건축심의 등과 공동위원회 운영 시 매뉴얼 등 제시
 - ‘조례’에서는 ‘심의’와 연계하여 심의 대상 및 범위 등 공공디자인 조례와의 연계성과 차별성 확보, 경관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시·군 조례 표준안 제시
 - ‘지역, 지구’에서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및 지구의 설정 기준을 검토하여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 간 연계를 위한 지침의 구체화, 각 제도의 기준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안과 시·군 담당자 및 설계사 등 주체별 활용 방법을 제시
 - ‘경관협정’에서는 「경관법」상 경관협정 이외에, 최근 제정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주민협정 등 관련 제도와의 연계 방안, 충남 경관협정 체결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유도 방안, 도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 제시
 - ‘경관사업, 시범사업’에서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들 중 충남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시, 도 차원에서 충남 경관자원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의 형태 및 지원방안 제시
 - ‘역량강화’에서는 주민 및 공무원의 경관인식 제고, 경관계획부터 사업추진,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론 제시

〈표 13〉 충청남도 경관계획 재정비 내용 구성 제시

내용 구성	세부 구성 및 방향	
1. 경 관 계 획 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차원의 큰 틀에서 방향 제시 - 기존 계획의 재검토 및 보완 관점에서 접근
2.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조사 결과 활용 -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지역 특성과 사업 및 계획 등 조사 - 기존 자원조사에서 변화된 자원 위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 현황 및 개발사업 조사 - 여러 시·군에 걸쳐 있거나 중요 경관자원 중 도가 중점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주요 경관자원 도출 및 조사 - 계획수립 이후의 성과와 문제점 도출(경관조직, 경관 관련 사업 및 경관협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심의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시·군 정책 및 관련 사업 성과 등) - 주/야간 경관자원 종합적 평가 - 각 부서 사업들 중 경관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 검토
3. 경관 기본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구상, 비전 및 목표 보완 - 기존 계획과 연속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여건 변화 반영 - 지역의 독창성과 다양성, 유연성 확보 - 관련 각 소관부처의 경관관리 목표와 추진방향 고려 - 수변 및 산림 등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 및 농산어촌 정주환경, 첨단산업을 주제로 방향 설정
4. 경관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경관관리구역 활성화 계획 제시 - 시·군 연계 특정경관계획 수립 방향 제시 - 경관자원을 분리하는 기준 및 경관지구 설정 기준 검토와 재검토 - 지역 특성 고려하여 경관자원 특성 기준 마련 - 원도심과 신도심, 농어촌과 도심 등 지역 특성과 최근 이슈 반영 - 시·군 경관계획에서 경관 특징 조사 및 관리계획 마련 	
5. 경관 부문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차원에서 중요한 경관유형이나 경관요소 계획 제시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중첩되는 관리계획 대상 범위 구분, 연계 및 차별성 확보 -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계획 지침 제시(충남 정책기조 반영) - 시·군 경계부 및 연속되는 자원에 대한 계획 제시 - 경관자원 특성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 「빛공해방지법」 및 충남 조명환경관리구역과 연계하여 계획 및 가이드라인 제시
6. 실행계획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 역할 강화(공공디자인센터 지역경관센터 역할)
	법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경관심의 대상과 기준 합리화 - [심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와 연계 운영 매뉴얼, 공동위원회 심의 시 절차와 심의도서 작성기준 제시 - [조례] 공공디자인 조례와의 관례, 충남 15개 시·군 조례와의 연계성 및 차별성 확보를 위한 조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시·군 조례 제·개정 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안 제시 - [지역, 지구] 타 법 제도와 연계 방안과 지구 설정 기준 검토 및 재정비 - [지역, 지구] 경관 관련 법 제도 간 연계 및 지침의 구체화 - [지역, 지구] 각종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 등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적용 방안과 주체별 활용 방법 제시
	경관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협정제도와 유사한 협약의 적용 방법 및 연계 방안 제시 - 시·군 경관협정 추진 유도 및 지원 방안 제시 - 경관협정에 대한 문제점(추진 사례)과 향후 방안 제시
	경관사업,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지역 정체성 강화 사업 발굴('국토 랜드마크 경관 형성', '도시 특화디자인 혁신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의 연계 및 관리 방향 제시) - 광역차원에서의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특정경관계획 등 추진사업 제시 - 시범사업의 목표, 사업 형태, 지원 방안 제시 - 경관사업 추진 시 부서 간 협의 제도 방안 제시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 및 시범사업 제안 - 시·군 공무원 대상 워크숍 및 경관분야 전문교육 추진 - 경관관리 모니터링체계 구축

3.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제3차 충청남도 경관계획을 재정비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계획의 재정비 시 내용 구성 및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광역지자체 경관계획은 「경관계획수립지침」상 시·군 경관계획 내용 중 부문별 경관계획 및 실행계획 등은 생략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 광역지자체 사례 분석 결과 시·군 경관계획과 동일한 구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에서 도 차원에서의 경관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경관자원 및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경관자원, 시·군 경계 등 선택·집중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관계획’ 및 ‘경관 부문별 계획’, ‘실행계획’에서도 경관자원의 분리 기준 및 계획, 시·군에서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정책 추진 시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시·군 경관계획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3차 계획의 재정비를 하고 있는 만큼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기존 계획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 계획 수립 이후의 성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의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 제도 및 상위계획 분석, 충남의 관련 계획 분석,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계획수립 내용 구성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시·군에서 경관정책을 추진할 때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계획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경관계획 재정비 내용 구성과 방향을 제안하였음
- 국토부가 수립한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는 「경관법」 및 「경관계획수립지침」,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등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진행을 제안하고 있어 충남 경관계획 재정비 시 앞서 제시한 내용 구성에 의해 수립된다면 국토부 법 제도 개정 시 역제안이 가능함
 - 경관심의 제도가 현재의 정책 및 사업의 여건 변화 반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심의 대상의 실효성 검토, 심의 기준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등과의 통합심의 및 건축위원회와의 공동위원회

운영 등 지자체의 심의제도 운영에 따른 「경관 심의 운영 지침」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충남의 경우 경관심의회와 건축심의회 공동위원회 운영, 경관심의 대신 공공디자인 심의를 운영하는 시·군이 많으므로, 금번 경관계획 재정비 시 도 차원에서 심의 대상 및 기준, 운영 매뉴얼 등을 제시한다면 국토부의 법 제도 개정 시 참고자료로 제안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과 방향에 의해 충남 경관계획이 재정비된다면 충남 15개 시·군에서는 큰 틀에서의 일관된 경관정책 실행 및 경관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충남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및 자료]

(1) 단행본

국토교통부. 2025.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

충청남도. 2019.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충청남도. 2019.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충청남도. 2012. 2020 충청남도 경관계획

(2) 보고서

박혜은 외. 2023. 충청남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효율화 방안. 충남연구원.

(3) 법령

경관법. 2019 시행. 법률 제 15460호(2018.3.13., 타법개정)

경관법 시행령. 2023 시행.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타법개정)

경관계획수립지침. 2018 시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26호(2018.12.26., 일부개정)

경관 심의 운영 지침. 2020 시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57호(2020.9.21., 일부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23년 시행. 법률 제19592호(2023.8.8., 타법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년 시행.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타법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3호, 2016.8.4., 제정

충청남도 경관 조례. 2024년 시행. 충청남도조례 제5785호, 2024.12.30., 일부개정

충청남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2013년 시행. 충청남도규칙 제3188호, 2013.4.1., 일부개정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4년 시행. 충청남도조례 제5485호, 2024.12.30., 일부개정

(4) 전자 문헌 또는 자료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2026~2030)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2025.)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과업지시서(2025.2.)

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2025.1.)

제2차 경상남도 경관계획 수립 기술용역 과업지시서(2022.7.)

2040 광주 도시경관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2021.3.)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과업이행요청서(2024.4.)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과업내용서(2021.3.)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2023.2.)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수립(3차) 용역 과업지시서(2024.4.)
2035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학술용역 과업지시서(2020.2.)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2020.1.)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수립용역(재정비) 과업지시서(2024.4.)
제2차 충청북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2024.11.)